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1,674호

예산회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3월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제67조 제1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7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1. 계약금액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77조 제2항 제3호 중 “2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제2차공사”를 “제1차공사”로 “제101조 제3항”을 “제101조 제4항”으로 한다.

제8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금액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제85조의3제1항 중 “20일”을 “14일”로 한다.

제86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 1항 본문 중 “재무부장관이 은행의 저축예금 금리를 참작하여 결정한 율”을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동항 단서 중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를 “예산사정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로 한다.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9조의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4항 중 “토목공사에 있어서는”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토목공사와의 공사”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와의 공사”로 한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 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배부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7호 중 “공업규격표시물품”을 “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으로 한다.

제112조 제1항 제4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 5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 8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 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 26호 중 “원호처장이 지정하는 원호대상자 집단복지공장”을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복지공장”으로 한다.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 표시물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에 대한 공업규격표시허가 또는 등급사정을 받은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매입할 때

제117조 단서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33조 중 “3월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81호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1항 단서 중 “예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예정가격이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이유

입찰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1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시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 구입 및 공사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예정가격 20억원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1985년 3월 31일 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를 과당경쟁에 의한 공사의 불실화를 막기 위하여 그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1986년 3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연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사의 준공검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조정함으로써 검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함(영 제85조의 3).

나. 공사 등의 대가지급기간을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기간은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 100분의 10을 유보하고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계약서 작성생략 ○ 공사 또는 제조계약 ○ 물품구입계약 ○ 외국에서 체결하는 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② 계약보증금의 해제 ○ 공사 또는 제조계약 ○ 물품구입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③ 검사조서 작성의 생략 ○ 공사 또는 제조계약 ○ 물품구입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④ 수의계약대상 ○ 공사 또는 제조계약 ○ 물품구입계약	예정가격 300만원 이하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⑤ 1인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금부담을 덜어줌(영 제86조제 1항 및 제 3항).

다. 정부가 계약상대방에게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지급지연 배상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율을 종전 년 7.6%에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년 19%)로 상향 조정함(영 제87조제 1항).

라. 토목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서와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던 것을 예정가격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의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99조의 2제 3항 내지 제 5항).

마. 정부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종합낙찰제의 적용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을 종전에는 당해 물품의 주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재제무부장관이 일괄하여 지정·고시하

도록 함(영 제101조제 2항).

바. 물품구입 및 공사 등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등 각종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계약의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76조, 제77조제 2항, 제84조, 제112조제 1항 및 제117조).

사. 정부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자의 과당경쟁에 의한 입찰로 야기될 수 있는 공사의 불실화를 막기 위하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입찰한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평균치의 아래로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를 예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1986년 3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1,081호 부록 제 1 항단서개정).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제11,675호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 2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제 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중앙설계 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7조제 5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한 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설계 입찰서에 관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조제 5 항 단서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75 미만으로서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경우에,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를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 당해공사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함으로써”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85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 법시행령특예규정 개정이유

대형공사계약제도의 입찰절차를 일부 개선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한 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서의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와 함께 설계서 및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인 설계·시공일괄

입찰은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입찰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설계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5인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설계서에 대한 심의없이 실시설계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 7 조제 5 항).

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는 덤핑입찰로 인한 정부공사의 불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전에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부적당한 자를 배제시키는 저가심사제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그 요건을 보완함(영 제 8 조제 5 항 단서).

会員動靜

변경 □서울지부=△오정수회원 / 아람건축연구소 / 종로구안국동175-87 / 733-0906

△김기석회원 / 아람건축연구소 / 종로구안국동175-87 / 733-0907

△유충규회원 / 뉴서울건축 / 종구만리동 2 가226-1 / 392-1801

△김성탁회원 / 한국건축설계연구소 / 용산구한남동794-8 / 792-0773

△방규상회원 / 세진건축 / 종구신당동267-40 / 252-2828

△홍순구회원 / 석진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삼성동107-9 / 545-2325

△조승제회원 / 건축사사무소연희건축 / 서대문구연희동169-16 / 332-0484

△노영진·이천원회원 / 건축연구소 자유공간 / 종로구사직동36-1 / 724-0874

△강순일회원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718-13 / 568-7423

△김춘웅·오원근회원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 718-13 / 562-9835

△한광희회원 / 가산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81-30 / 94-5728

△지영국회원 / 주·삼안건설기술공사 / 강남구논현동91-3 / 541-2121

△백승옥회원 / 백강건축연구소 / 종로구관수동20 / 265-4606

△정구근회원 / 삼예건축 / 강남구삼성동57-1 / 543-1031

△이봉로회원 / 대륙건축설계사무소 / 관악구봉천 4 동1590-7 / 877-3166

□부산지부=△이인수회원 / 목전종합건축사사무소 / 동구초량동1162-9 / 463-7470

△송유덕회원 / 송유덕건축사사무소 / 동구초량 5 동1156-6 / 463-8042

△배종원회원 / 배종원건축사사무소 / 중구남포동 1 가34 / 22-8090

△이건영회원 / 건향건축사사무소 / 중구남포동 1 가34 / 22-8812

△이동배회원 / 동서건축설계사무소 / 동구초량 5 동1156-6 / 463-9845

△장호성회원 / 삼아장호성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2-46 / 89-4067

△김성곤회원 / 삼아김성곤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2-46/88-8193

□경기지부=△김중권회원 / 김중권건축사사무소 / 파주군파주읍아동리33 8/2-2410

△윤전회원 / 윤전건축사사무소 / 남양주군구리읍수택리424-1 / 2-8209

△김동호·최의준회원 / 김동호·최의준건축사사무소 / 시흥군군자면원곡리761-11 / 6-7000, 6-2500

△조성만회원 / 조성만건축사 / 수원시매산로 3 가

△권영근회원 / 권영근건축사사무소 / 안양시안양동493-6 / 3-3927

△홍대현회원 / 홍대현건축사사무소 / 강화군강화읍관청리 / 170-4 / 2-3810

□충북지부=△이충구회원 / 이충구건축사사무소 / 제천시청전동108-15/ 2-6869

△오선교·김성호회원 / 선합동건축사사무소 / 청주시영동50-2 / 2-4370

□제주지부=△오재영회원 / 삼주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1 동1789-2

△유정철회원 / 오란도건축사사무소 /

△김백교회원 / 아람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2 동1183-8
△백형철회원 / 삼진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2 동1768-27